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물산업 진흥 제도 정비 및 정책 성과관리 체계화〉
■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31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물산업 진흥 제도 정비 및 정책 성과관리 체계화	3
(1) 개정안 취지	6
(2) 정의	9
(3) 기본계획 및 기업지원사업의 성과평가·이행 체계 강화 등	12
(4) 물산업 공공기관에 실증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권한 부여	15
(5) 그 밖의 사항	21

I. 제안경위

2026년 5월 12일 광상언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내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 증대를 위하여 물산업 진흥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첨단산업과 물산업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실행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물산업 실증화시설 조성·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한편,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하여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가. 법 적용의 명확성,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과 물산업의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 정의 신설함(안 제2조제2호).
- 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실행 제고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전망,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7호의2·제7호의3).
- 다. 물기업 지원을 위한 실증 인프라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물산업 공공기관에 실증화시설 조성·운영 기능을 부여함(안 제15조제1항).
- 라. 정부의 물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과평가 근거 신설함(안 제2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물산업 진흥 제도 정비 및 정책 성과관리 체계화

개정안은 물산업 진흥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① ‘물산업’의 정의를 정비하고(안 제2조), ②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환류 체계를 신설함과 아울러 국내외 기술 연계·협력 근거를 확대하며(안 제5조, 제8조 및 제23조의2), ③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주체에 ‘물산업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도록 하고(안 제15조), ④ 관련 법률 명칭 반영 및 공무원 의제 조항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4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파. (생략) 3. ~ 7.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물순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산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 가. ~ 파. (현행과 같음) 3. ~ 7. (현행과 같음)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① (생략)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생략) 2.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 7. (생략) <신설> <신설> 8. (생략) ③·④ (생략) 제7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② (생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① 정부는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정보 등의 교류 4. (생략) ② (생략)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분석 및 변화에 대한 전망 3. ~ 7. (현행과 같음) 7의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7의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이행 방안 8.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① ----- ----- ----- -. 1.·2. (현행과 같음) 3. 국내외 물관리기술의 연계·협력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
--	---

지의 조성·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신설>

지의 조성·운영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성하여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조성·운영-----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

-----.

⑥ -----
----- 입지선정, 공동 조성 및 운영 -----
-----.

제23조의2(성과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기업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물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주기, 내용, 절차,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 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 15조제3항 및 제23조----- ----- ----- -----

(1) 개정안 취지

‘물산업¹⁾’이란 수자원 개발, 공급·이용, 선순환 처리 등 물순환 전과정에 걸친 제조, 건설, 운영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산업 일체를 포괄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말함.

【 물산업의 주요 사업 범위 】

구분	수자원 관리·개발	공급·이용	처리 및 재이용
건설	• 댐, 지하수 개발 • 하천 정비	• 취수, 도수관 건설 • 정수장, 급수망 건설	• 하·폐수처리장, 재이용시설 건설 • 하·폐수 관거 건설
제조	• 댐, 담수화, 지하수 개발 관련 기자재	• 정수처리 기자재 및 약품·측정기기 등 • 도수, 배수관 등 기자재 • 먹는샘물, 정수기 등	• 하·폐수처리 기자재 및 약품·측정기기 등 • 하·폐수 관거 기자재
운영 관리	• 수자원시설 보호·운영 • 수문조사, 홍수기땀예보 등	• 정수장 운영·관리 • 급수 관로 등 유자관리	• 하·폐수처리장,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 하·폐수 관거 유지·관리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 2024. 3, p.2

한편, 기후변화, 인구증가, 산업고도화로 인해 세계의 물수요는 증가²⁾하고 있고, 세계 물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9,800억 달러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3.8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규모는 183억 달러로 미국(2,381억 달러), 중국(1,629억 달러), 일본(893억 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수준³⁾임.

또한,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물기업 매출액(51조 6,056억원) 대비 수출액(2조 809억원)은 4% 수준⁴⁾이고, 수출 참여 사업체는 1.5%⁵⁾로서 국내 물기업은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물기업의 93.4%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체⁶⁾로서 기술개발, 사업확장 및 해외진출 역량이 다소 부족한 상황임.

현행법 제5조⁷⁾에 따라 정부는 물산업 진흥을 위한 최상위 종합계획

2)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 2024. 3, p.5
- 1960년 이후 전세계 물 수요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50년까지 현재보다 20~25% 증가할 것으로 예측(세계자원연구소, WRI)

3)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 2024. 3, p.6

4) 기후에너지환경부, “2024년 기준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2026. 3, p.34

5) 기후에너지환경부, “2024년 기준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2026. 3, p.74

6) 기후에너지환경부, “2024년 기준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2026. 3, p.39

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①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5. 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6.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7.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8.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인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연구·개발 촉진⁸⁾, 우수제품 지정⁹⁾,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¹⁰⁾ 및 해외진출 지원¹¹⁾ 등 물산업

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① 정부는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물관리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물관리기술의 연구·개발
3.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정보 등의 교류
4. 그 밖에 물관리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증·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이 조에서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에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보급 확대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국고보조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하여, 협력체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제품등을 구매하거나 관할 물산업 관련 시설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진흥 시설
2. 물기업의 기술 검증, 제품 인증 시설 및 실증화 시설
3. 물기업 집적단지
4.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1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2.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3.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4. 기술·공법 또는 제품의 수출 지원
5. 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개발 및 해외 수주 지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내수 중심의 영세한 산업 구조를 극복하기 어렵고, 기존의 단편적 기술·사업 중심 정의로는 통합 물관리 정책에 맞춘 물순환 전 과정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수자원 개발부터 재이용까지 물순환 전 과정을 포괄하도록 물산업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기본계획의 성과평가 체계 신설을 통해 정책 이행력을 확보하며, 실증단지 조성 주체 다각화 및 지원 사업 사후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2) 정의

개정안은 물산업의 기본 정의를 기존의 단순 사업 열거 방식에서 ‘물순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산업 및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법은 물산업¹²⁾을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1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
-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 라. 「수도법」 제3조제35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하천법」, 「댐건설법」 등 10개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설계·건설·운영·컨설팅 등의 사업으로 열거하여 정의하고 있음.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AI 기반 물 관리, 스마트 수질관리, 재이용수, 수처리 첨단 소재·부품 등 기후테크¹³⁾와 ICT¹⁴⁾가 결합된 첨단 융복합 물산업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개별 시설·인프라 중심 정의 규정으로는 데이터·소프트웨어·기후기술 등 신산업 분야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워, 신기술 사업화 지원 및 체계적인 물산업 육성 정책 추진 시 법적 적용 대상의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자원의 개발·관리부터 공급·이용, 처리 및 재이용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통합 물순환(Water Cycle)’ 범주로 체계화하고 첨단 융복합 기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법적 물산업 범주에 명확히 포섭함으로써, 신기술 사업화 및 지원 정책 추진 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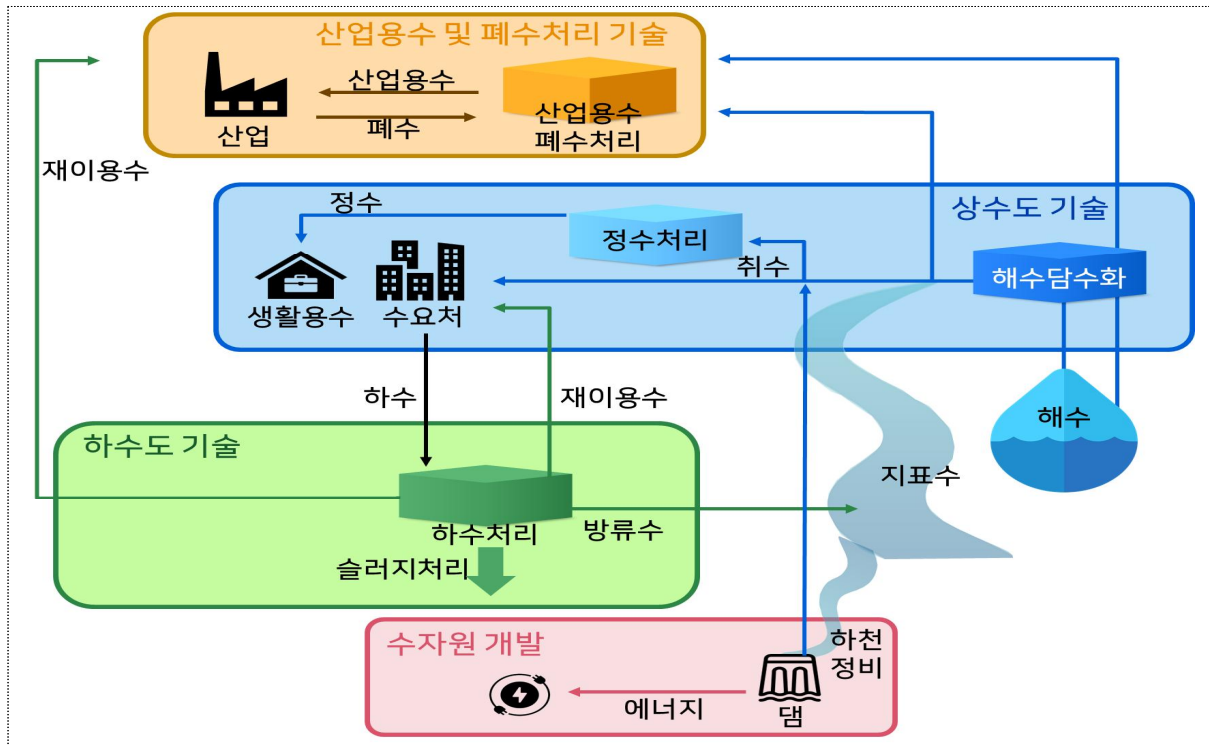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소재·장치·기기·약품의 시험·검사·인증, 제조·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13) 기후테크: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을 의미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4)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정보 기술(IT)에 통신(Communication)이 결합된 개념이며,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전송하는 모든 기술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관리기술과 물산업 측면에서의 물순환계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물시장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점, 정부의 기본계획상 첨단 물산업 육성 과제¹⁵⁾들이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 적용의 명확성, 첨단산업과 물산업의 융합 및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15)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 기본방향 (p.19)

1. 핵심 물관리기술 내재화 및 유망 물산업 기술 선도
 - 핵심 기자재 및 원천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등 국산 기술의 경쟁력 확보
 - 기후 대응 기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최적 물관리기술 등 유망 물관리기술의 선도적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3) 기본계획 및 기업지원사업의 성과평가·이행 체계 강화 등

개정안은 ① 기본계획 내용에 정책 성과평가 및 이행 방안을 신설하고(안 제5조), ② 창업·사업화·해외진출 등 물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사후 조치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23조의2), ③ 기술협력의 범위를 국내외 물관리기술의 연계·협력으로 확대(안 제8조)하려는 것임.

먼저, 현행법에 따른 기본계획¹⁶⁾에는 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② 국내외 환경 분석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 ③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④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⑤ 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의 사항이 포함됨.

그러나 현행법은 수립 단계의 목표 및 개별 과제 등 선언적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집행 이후의 사후 성과평가나 환류(Feedback), 그리고 개별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 규정이

1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5. 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6.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7.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8.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미비한 실정¹⁷⁾임.

2021년 12월 재정사업의 성과목표 관리 및 성과평가 제도가 도입¹⁸⁾됨에 따라,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정책과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효율성·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재정 운용상의 책무가 한층 강화되었음.

이에 안 제5조 및 제23조의2는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성과·환류 체계를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물산업 육성 정책의 이행력을 높이고 재정 투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음으로, 현행법 제8조¹⁹⁾에 따라 정부는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

17) 현행법에 따른 성과평가는 ①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계획(제11조), ② 혁신형 물기업의 지원(제14조) 등 일부 특정 사업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18)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 ②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의 기준은 성과관리의 비용 및 효과를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①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1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① 정부는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 위하여 ① 물관리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② 물관리기술의 연구·개발, ③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정보 등의 교류 등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기관 간 기술협력’ 규정은 주로 국내 기관 간 협력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물시장 환경 변화와 첨단·융복합 기술 동향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안 제8조는 기술협력의 범위를 ‘국내외 물관리기술의 연계·협력’으로 확대·명확화함으로써, 국내 기술 간 융복합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 기술과의 교류, 국제 공동 연구개발, 국내 우수 기술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바,

이는 글로벌 물시장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본계획의 실행력 강화와 지원사업의 성과 환류를 통한 물산업 육성의 효율성 확보, 그리고 국제 공동연구 등 기술 연계·협력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할 필요성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1. 물관리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물관리기술의 연구·개발

3.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정보 등의 교류

4. 그 밖에 물관리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물관리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물산업 공공기관에 실증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권한 부여

개정안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주체에 ‘물산업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을 추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이를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²⁰⁾는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특화구역으로,

현행법 제15조²¹⁾에 따라 정부는 2019년 대구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실증화 및 진흥시설 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2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성을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및 집적단지를 말한다.

2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진흥 시설
2. 물기업의 기술 검증, 제품 인증 시설 및 실증화 시설
3. 물기업 집적단지
4.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생략)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주요시설 현황 】

구 분		규 모	내 용
실증화 시설	실증 플랜트	· 지상 1층 · 연면적 24,951㎡	· (실증플랜트) 5,000㎡/일 정수 2,000㎡/일, 하수 1,000㎡/일 폐수 1,000㎡/일, 재이용 1,000㎡/일
	종합관망 시험시설	· 지상 1층 · 연면적 963㎡	· 고가수조, 회수조, 공동구, 종합순환관망
진흥 시설	물융합 연구센터	· 물융합연구동내 · 연면적 11,956㎡	· 임대용 연구시설, 실험실 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 지상 6층 · 연면적 14,718㎡	· 홍보전시관, 운영기관 사무실, 임대사무실, 정보화센터, 편의시설, 게스트하우스
	워터 캠퍼스	· 지상 4층 · 연면적 5,620㎡	· 도서관, 식당, 강의실, 창업보육실 등
집적단지 (대구광역시 조성)		· 전체면적 464,209㎡ · 분양면적 334,272㎡	· 물산업 제조기업 39개사 입주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정부는 입주기업에게 ①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비용, ② 연구·진흥 시설 및 물산업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③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의 우선 참여 등의 지원²²⁾을 하고 있음.

2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입주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기업등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연구·진흥 시설 및 물산업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4. 제21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의 우선 참여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우선 제공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참여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 현황 】

구 분	지원 내용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 물산업 관련 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수요조사 및 개발, 과정운영, 교육 효과성 분석, 홍보 등 · 사업비: 연간 4억원
시설 사용료 감면	· 임대시설 및 실증화시설 30% 감면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물산업 소부장 육성전략'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20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 맞춤형 현지 사업화 필수 과정 등 지원 · 사업비: 연간 3억 6백만원
자금융자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에서 대상 선정 시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가점(5점) 부여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설치자금(100억원 한도), 성장기반자금(10억원 한도), 오염방지시설자금(300억원 한도) 지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처럼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대규모 실증플랜트와 연구·진흥 인프라를 갖추고 입주기업 지원을 총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15조²³⁾는 조성·운영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만 한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등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2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진흥 시설
2. 물기업의 기술 검증, 제품 인증 시설 및 실증화 시설
3. 물기업 집적단지
4.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는 다음 각 호의 단지·시설·지구로 본다.

정하고 있고(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성 업무를 제외한 운영에 한해서만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및 제4항), 사용료 징수 주체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음(제5항).

그러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같은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는 고난도의 물 분야 복합 인프라 구축과 전문적인 기술 검증이 결합된 특화구역으로, 입주기업의 실증 수요와 사후 운영 단계의 위험요소들을 기획·설계 등 초기 조성 단계부터 반영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인력과 기술인프라를 갖춘 물산업 공공기관이 조성 단계부터 참여하여 일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의 신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령에 따른 물산업 공공기관²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이 있고,

전문기관²⁵⁾은 한국물기술인증원, 물산업협의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농어촌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있음.

2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25)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인증원
2. 협의회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 ⑤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의 기관
2.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물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4. 물산업 분야 비영리단체
5. 물산업 관련 지방공기업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물산업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현황 】

구 분	물산업 공공기관 (법 제2조)		전문기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0조)
역할 및 기능	물 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시범사업 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물산업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 수탁
공공기관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준정부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기타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방직영기업	·광역 상·하수도 사업소(18개소) ·기초 상·하수도 사업소(210개소)		·광역 상·하수도 사업소(18개소) ·기초 상·하수도 사업소(210개소)
지방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지방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광주환경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舊대구환경공단) 등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광주환경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舊대구환경공단)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해당없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해당없음		· K-water연구원 · 서울물연구원 등
물산업 연구소 개설된 학교	해당없음		·고려대학교(물에너지융합기술연구소) ·연세대학교(하수재이용연구소) ·성균관대학교(수자원전문대부설연구소) 등
물산업 분야 비영리단체	해당없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물포럼 등
기타	해당없음		·한국물산업협의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처럼 물산업 공공기관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대상은 상당 부분 중첩됨.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안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접 독자적·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조성·운영하는 경우와 안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되는 경우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질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공공기관 자체 사업으로서의 조성·운영(안 제15조제1항)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수행(안 제15조제3항·제4항)을 체계적으로 구별하여 시설 소유권의 귀속, 국비 지원 범위 및 사용료 수입의 처리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증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신기술 실증 인프라 조기 도입 등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은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안 제7조제3항),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안 제15조제3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먼저 안 제7조제3항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7조²⁶⁾에 따라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고, 이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동 규정은 제정(2018. 6. 12.) 당시부터 명시되었으나, 이후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부개정(2020. 6. 9.)되었음에도 인용 조문 정비가 누락된 채 유지되어 왔음.

안 제7조제3항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률 및 관련 계획 명칭²⁷⁾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입법필요성이 인정됨.

다음으로 안 제24조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24조²⁸⁾는 제23조에 따라

2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활용,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물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²⁹⁾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24조는 위탁 업무 수행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의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이 갖는 높은 공공성을 고려할때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2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인증원
2. 협의회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4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9)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법령 정합성 확보 및 위탁 업무 수행자의 책임성 제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8